

참고

특정 진료과목 편중 방지 기준 신구 대비표

종전	개선(안)
<p>1. 적용 범위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1. 적용 범위</p> <p><u>1. 4.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</u> 위 II.1.2.의 장소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광고물을 사전심의를 하는 자</p>
<p>2. 적용 기준</p> <p>2.1.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<u>특정 진료과목(성형외과, 피부과) 광고 비율을 50% 이하로 하여 다른 진료 과목과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.</u></p> <p>2.2. 특정 진료과목(성형외과, 피부과)만 진료하는 의료기관 <u>광고하고자 하는 해당 공항 또는 무 역항 <u>전체</u> 광고의 30% 이하로 하여야 한다.</u></p>	<p>2. 적용 대상 및 기준</p> <p>2.1.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의료기관 <u>특정 진료과목(성형외과, 피부과)이 외에 한 개 이상의 다른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성형·피부 광고내용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.</u></p> <p>2.2. 특정 진료과목(성형외과, 피부과)만 진료하는 의료기관 <u>광고하고자 하는 해당 공항 또는 무 역항 <u>전체</u> 광고의 40% 이하로 하여야 한다.</u></p>
<p>3. 절차</p> <p>광고주는 의료광고 계약 체결에 앞서 해당 광고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광고매체 운영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, 광고매체 운영자는 이를 검토한 뒤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p>	<p>3. 절차</p> <p>광고주는 의료광고 계약 체결에 앞서 <u>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내용·방법에 대하여 민간자율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, 해당 광고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광고매체 운영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, 광고매체 운영자는 이를 검토한 뒤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</u></p>

**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의한
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어 의료광고의
특정 진료과목 편중 방지를 위한 기준**

개정일 : 2019. 12. 26. (2020. 1. 1.부터 적용)

I. 목적

「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광고가 특정 진료과목(성형외과, 피부과)에 편중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II. 범위, 기준 및 절차

1. 적용 범위

1.1. 광고주

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

1.2. 광고장소

「항공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중 국제항공노선이 개설된 공항과
「항만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무역항

1.3. 광고매체 운영자

위 II.1.2.의 장소에서 광고매체를 운영하는 자

1.4.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

위 II.1.2.의 장소에서 광고하고자 하는 광고주의 광고물을 사전심의를 하는 자

2. 적용 대상 및 기준

2.1. 특정 진료과목(성형외과, 피부과)을 포함한 여러 과목을 진료하는 의료기관

특정 진료과목(성형외과, 피부과) 이외에 한 개 이상의 다른 진료과목을 포함하여 성형·피부 광고내용으로 편중되지 않고 균형을 맞추어야 한다.

2.2. 특정 진료과목(성형외과, 피부과)만 진료하는 의료기관

광고하고자 하는 해당 공항 또는 무역항의 전체 보유 광고매체 수의 40% 이하로 하여야 한다.

3. 절차

광고주는 의료광고 계약 체결에 앞서, 의료해외진출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광고내용·방법에 대해 민간 자율기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하며, 해당 광고가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광고매체 운영자에게 문의하여야 하고, 광고매체 운영자는 이를 검토한 뒤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